

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

(유정희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791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10월 15일

발 의 자 : 유정희, 강대호, 김기대,
김인제, 김제리, 김태수,
김희걸, 문장길, 박기열,
박상구, 박순규, 서윤기,
성흠제, 송명화, 송아량,
송재혁, 양민규, 이광성,
이영실, 이정인, 이준형,
임종국, 장상기, 전병주,
최 선, 최응식, 홍성룡
의원(27명)

1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 한강시민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선임 대상을 동 조례에서
는 ‘규칙에서 정하는 실·국장’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규칙에서는
본부장까지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게 수정하고, 소상공
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재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이 2020년 12월
31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.

또한, 어문 규정과 법제처 「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맞게 조례
일부를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재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이 종료됨
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함(안 제14조제2항제6호 및 제14조제3항)
- 나. 서울특별시 한강시민위원회 당연직 위원 선임 대상에 ‘실·국장’ 외에
추가적으로 ‘본부장’을 포함하도록 함(안 제22조제4항제1호)
- 다. 「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조례 일부를 정비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산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제1항의”를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14조제2항제6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.

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단체에게”를 “단체에”로 한다.

제17조제1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“그러지”를 “그렇지”로 한다.

제22조제4항제1호 중 “실·국장”을 “실·국장·본부장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9조(공동대책 수립) ① (생략)</p> <p>② 시장은 <u>제1항의 공동대책 수립을 위한 조사·연구·복원·복구 등의 협력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9조(공동대책 수립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제1항에 따른</u>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14조(이용료) ① (생략)</p> <p>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6. <u>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(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)으로 이용료를 결제하는 자. 다만,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감면사유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함</u></p> <p>③ <u>제2항에 따른 이용료의 감면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. 다만, 제2항제6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14조(이용료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<삭제></u></p> <p>③ ----- ----- . <u><단서 삭제></u></p>

④ ~ ⑦ (생략)

제16조(행정적·재정적 지원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게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~ 6. (생략)

② ~ ④ (생략)

제17조(금지행위) ① 누구든지 한강공원 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.

1. ~ 9. (생략)

10.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렇지 않다.

가. ~ 라. (생략)

11. ~ 15. (생략)

② (생략)

제22조(한강시민위원회) ① ~ ③ (생략)

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④ ~ ⑦ (현행과 같음)

제16조(행정적·재정적 지원) ① -----

- 단체에 -----

-----.

1. ~ 6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17조(금지행위) ① -----

-----.

1. ~ 9. (현행과 같음)

10. -----

----- 그렇지 않다 -----.

가. ~ 라. (현행과 같음)

11. ~ 15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22조(한강시민위원회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
-----.

1. 당연직 위원 : 행정2부시장, 한강
사업본부장과 규칙에서 정하는 실
· 국장

2. (생략)

⑤ ~ ⑥ (생략)

1. -----

실 · 국장 · 본부장

2. (현행과 같음)

⑤ ~ ⑥ (현행과 같음)